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힐스테이트 오룡 42블록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2021년 11월 12일(금) 게재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힐스테이트 오룡 42블록'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정정부분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옵션 (39~47 P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선택옵션 - 드레스룸 선택옵션 - 맘스룸 선택옵션 - 마감 선택옵션 ■ 가전옵션 (48~49 P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 기타가전 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옵션 (39~47 P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선택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70%) - 드레스룸 선택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70%) - 맘스룸 선택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70%) - 마감 선택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70%) ■ 가전옵션 (48~49 P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70%) - 기타가전 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옵션 (39~47 P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선택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80%) - 드레스룸 선택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80%) - 맘스룸 선택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80%) - 마감 선택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80%) ■ 가전옵션 (48~49 P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80%) - 기타가전 옵션(계약시 10%/중도금 10%/잔금 금액 80%)

■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사항(기본 선택옵션, 드레스룸 선택옵션, 맘스룸 선택옵션, 마감 선택옵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기타가전 옵션)

※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른 모델하우스 운영(방문관람, 서류접수, 공급계약체결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힐스테이트 오룡 42블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견본주택의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니,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일정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방문인원 최소화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사전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예약제는 본 아파트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예약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추후 문자안내로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3.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811-0717)**를 실시 할 예정이오니,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12.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라남도 무안군)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전라남도 무안군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무안군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기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공급 받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분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 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2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점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함)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행위 등 부정행위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점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점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사전서류 제출 및 자격검증 기간	계약체결
일정	11월 23일(화)	11월 24일(수)	11월 25일(목)	12월 1일(수)	12월 5일(일)~11일(토)	12월 13일(월)~18일(토)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당사 견본주택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7.0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건축과 - 제17985호(2021.11.11.)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공동4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최고24층 6개동 총4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73세대 (기관추천 46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신혼부부 95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7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민영 주택	2021000850	01	084.9321A	84A, 84AD	84.9321	26.3557	111.2878	51.9336	163.2214	62.9675	119	66	11	11	23	4	17	53	3
		02	084.9589B	84B, 84BD	84.9589	27.0290	111.9879	51.9497	163.9376	62.9874	238	136	23	23	47	8	35	102	3
		03	084.9339C	84C, 84CD	84.9339	26.6952	111.6291	51.9346	163.5637	62.9689	125	71	12	12	25	4	18	54	3
	합계											482	273	46	46	95	16	70	209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25]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321A	084.9589B	084.9339C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일반층	84A	84B	84C
	최상층	84AD	84BD	84CD

※ 각 주택형 최상층 세대는 사업계획승인도서상 84m²AD, 84m²BD, 84m²CD 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별도로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기본 주택형으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2.05.30	22.09.30	23.01.30	23.05.30	23.09.30	24.01.30	입주지정일		
84A	119	1층	3	84,589,341	223,610,659	308,200,000	30,820,000	30,820,000	30,820,000	30,820,000	30,820,000	30,820,000	30,820,000	30,820,000	92,460,000	
		2층	6	84,589,341	230,310,659	314,90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94,470,000
		3층	6	84,589,341	233,610,659	318,20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95,460,000
		4층	6	84,589,341	237,010,659	321,60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96,480,000
		5층	6	84,589,341	240,310,659	324,90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97,470,000
		6층	6	84,589,341	243,710,659	328,30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98,490,000
		7층	6	84,589,341	247,010,659	331,60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99,480,000
		8층~차상층	74	84,589,341	250,410,659	335,0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0,500,000
		최상층	6	84,589,341	317,410,659	402,0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84B	238	1층	3	84,616,033	233,683,967	318,300,000	31,830,000	31,830,000	31,830,000	31,830,000	31,830,000	31,830,000	31,830,000	31,830,000	31,830,000	95,490,000
		2층	9	84,616,033	240,583,967	325,20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97,560,000
		3층	12	84,616,033	244,083,967	328,700,000	32,870,000	32,870,000	32,870,000	32,870,000	32,870,000	32,870,000	32,870,000	32,870,000	32,870,000	98,610,000
		4층	12	84,616,033	247,483,967	332,10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99,630,000
		5층	12	84,616,033	250,983,967	335,60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100,680,000
		6층	12	84,616,033	254,383,967	339,0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7층	12	84,616,033	257,883,967	342,50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102,750,000
		8층~차상층	154	84,616,033	261,383,967	346,0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103,800,000
		최상층	12	84,616,033	330,583,967	415,200,000	41,520,000	41,520,000	41,520,000	41,520,000	41,520,000	41,520,000	41,520,000	41,520,000	41,520,000	124,560,000
84C	125	1층	3	84,591,134	214,308,866	298,90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89,670,000
		2층	6	84,591,134	220,808,866	305,40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91,620,000
		3층	6	84,591,134	224,008,866	308,60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92,580,000
		4층	6	84,591,134	227,308,866	311,900,000	31,190,000	31,190,000	31,190,000	31,190,000	31,190,000	31,190,000	31,190,000	31,190,000	31,190,000	93,570,000
		5층	6	84,591,134	230,508,866	315,10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94,530,000
		6층	6	84,591,134	233,808,866	318,40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95,520,000
		7층	6	84,591,134	237,008,866	321,60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96,480,000
		8층~차상층	80	84,591,134	240,308,866	324,90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97,470,000
		최상층	6	84,591,134	305,208,866	389,80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116,940,000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²)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되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증감에 대해서 금액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동일 블록 내에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무안군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고,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유상옵션 품목 가격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 11. 23.(화) (청약Home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사업주체 건본주택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84A(D)	84B(D)	84C(D)	합계	
기관추천	장애인	전라남도	3	5	3	11
		광주광역시	-	1	-	1
	국가유공자		3	6	3	12
	중소기업근로자		3	6	3	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5	3	10
	소계		11	23	12	46
다자녀가구		11	23	12	46	
신혼부부		23	47	25	95	
노부모부양		4	8	4	16	
생애최초		17	35	18	70	
합계		66	136	71	27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53 1273 2047 1458">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합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전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국가유공자	전남서부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주택건설지역),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3항)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무안군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제곱미터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9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주택건설지역),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무안군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주택건설지역),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무안군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85제곱미터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7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주택건설지역),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 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무안군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복 청약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 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무안군 3개월 미만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청약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1.23.(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당사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공급	1순위	2021.11.24.(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1.11.25.(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은행 창구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분,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 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p>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5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자격검증 일정

■ 일정 및 자격검증 서류접수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일반/특별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12.01.(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당첨일로부터 10일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12.05.(일)~12.11(토) 7일간 (10:00~16:00) • 장소 : 건본주택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리 2288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계약 체결일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2.01.(수) ~ 2021.12.10(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2.01.(수) 09: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예정)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기간이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주택형 및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참여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적용합니다.

6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 공통 자격검증 서류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가점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 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 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다자녀가구		○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일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아래표3>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점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생애최초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소득세납부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재직(위촉)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행복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장소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7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12.13.(월) ~ 2021.12.18.(토) 6일간, 10:00 ~ 16:00	힐스테이트 오룡 건본주택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88번지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계약 체결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증	-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전자수입인지	-	•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제3자 계약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계약자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2021.01.0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 추측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추측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원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물건은 해당 사업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주식회사 남약오통42피에프브이에서 시행·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식회사 남약오통42피에프브이가 「주택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인 (주)화이진개발, 에이치엠지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남약오통42피에프브이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남약오통42피에프브이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31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수입금계좌, 발코니확장대금 및 옵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포함)의 명의를 주식회사 남약오통42피에프브이의 자금관리사인 대신자산신탁(주)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분양대금 반환, 하자책임,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남약오통42피에프브이가 부담하며, 대신자산신탁(주)는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PF대출원리금의 상환(지급)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전북은행	1013-01-4125111	대신자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계약자 동호수	

-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전북은행 (1013-01-4125111,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입금 예시 : 101동 2301호 계약자 → 1012301홍길동 / 103동 301호 계약자 → 1030301홍길동)
- ※ **국도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2020.07.13. 이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 무주택세대주)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시 LTV, DTI 10% 우대가 가능하니 해당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10.26.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및 차주단위 DSR 조기 시행될 예정이오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알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건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치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이자 대납(이하 "이자후불제" 등)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및 사업주체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 단지로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실, 휘트니스 등), 어린이놀이터(1개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8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1)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84A, 84AD	8,240,000	824,000	824,000	6,592,000
84B, 84BD	9,990,000	999,000	999,000	7,992,000
84C, 84CD	9,717,000	971,700	971,700	7,773,600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납부계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공사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최초 발코니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2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공사금액 (계약금)	전북은행	1013-01-4125133	대신자산신탁(주)
발코니확장공사금액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계약자 동호수

-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전북은행 (1013-01-4125133,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단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실별 부분확장은 불가합니다.
- 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 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거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룸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룸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룸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룸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사시는 지역별 단열성능 확보제품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유리(원자재 브랜드,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발코니 사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통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공간의 크기,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 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 확장세대는 확장형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선택 옵션 (발코니 확장 시 무상옵션 선택 가능)

품 목	주택형	타 입		비 고
평면선택 옵션	전 주택형	택1	침실3, 거실(분리형)	
			침실3, 거실(통합형)	

■ 유상옵션

1. 기본 선택옵션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품목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기본 선택 옵션	84A (1~5층)	①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030,000	103,000	103,000	824,000	
		②	현관중문	택1	현관중문	1,630,000	163,000	163,000	1,304,000
					현관중문 + 현관에어샤워기 + 핸드형브러쉬	2,440,000	244,000	244,000	1,952,000
		③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④	고급거실조명	택1	거실, 침실3 분리형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거실, 침실3 통합형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⑤	화장대	화장대	1,910,000	191,000	191,000	1,528,000	
		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060,000	106,000	106,000	848,000	
	⑦	주방팬트리 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140,000	114,000	114,000	912,000		
	⑧	냉장고장	택1	냉장고장	920,000	92,000	92,000	736,000	
				BI김치냉장고 선택시	1,520,000	152,000	152,000	1,216,000	
				비스포크 냉장고 선택시	1,460,000	146,000	146,000	1,168,000	
	84B (1~5층)	①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030,000	103,000	103,000	824,000	
		②	현관중문	택1	현관중문	1,630,000	163,000	163,000	1,304,000
					현관중문 + 현관에어샤워기 + 핸드형브러쉬	2,440,000	244,000	244,000	1,952,000
		③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	1,270,000	127,000	127,000	1,016,000	
		④	고급거실조명	택1	거실, 침실3 분리형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거실, 침실3 통합형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⑤	화장대	화장대	1,910,000	191,000	191,000	1,528,000	
		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⑦	주방팬트리 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280,000	128,000	128,000	1,024,000		
	⑧	냉장고장	택1	냉장고장	920,000	92,000	92,000	736,000	
				BI김치냉장고 선택시	1,520,000	152,000	152,000	1,216,000	
				비스포크 냉장고 선택시	1,460,000	146,000	146,000	1,168,000	
84C (1~5층)	①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030,000	103,000	103,000	824,000		
	②	현관중문	택1	현관중문	1,630,000	163,000	163,000	1,304,000	
				현관중문 + 현관에어샤워기 + 핸드형브러쉬	2,440,000	244,000	244,000	1,952,000	
	③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	1,270,000	127,000	127,000	1,016,000		
	④	고급거실조명	택1	거실, 침실3 분리형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거실, 침실3 통합형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⑤	화장대	화장대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170,000	117,000	117,000	936,000		
⑦	주방팬트리 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010,000	101,000	101,000	808,000			
⑧	냉장고장	택1	냉장고장	1,120,000	112,000	112,000	896,000		
			BI김치냉장고 선택시	1,640,000	164,000	164,000	1,312,000		
			비스포크 냉장고 선택시	1,580,000	158,000	158,000	1,264,000		

구분	주택형	품목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기본 선택 옵션	84A (6~차상층)	①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990,000	99,000	99,000	792,000		
		②	현관중문	택1 현관중문 + 현관에어샤워기 + 핸드형브러쉬	현관중문	1,490,000	149,000	149,000	1,192,000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③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④	고급거실조명	택1 거실, 침실3 분리형 거실, 침실3 통합형	라인조명(디밍기능포함)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 간접조명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⑤	화장대	화장대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020,000	102,000	102,000	816,000		
	⑦	주방팬트리 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⑧	냉장고장	택1	냉장고장	870,000	87,000	87,000	696,000		
				Bi김치냉장고 선택시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비스포크 냉장고 선택시	1,340,000	134,000	134,000	1,072,000		
	84B (6~차상층)	①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990,000	99,000	99,000	792,000		
		②	현관중문	택1 현관중문 + 현관에어샤워기 + 핸드형브러쉬	현관중문	1,490,000	149,000	149,000	1,192,000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③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④	고급거실조명	택1 거실, 침실3 분리형 거실, 침실3 통합형	라인조명(디밍기능포함)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 간접조명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⑤	화장대	화장대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120,000	112,000	112,000	896,000		
	⑦	주방팬트리 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240,000	124,000	124,000	992,000			
	⑧	냉장고장	택1	냉장고장	870,000	87,000	87,000	696,000		
				Bi김치냉장고 선택시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비스포크 냉장고 선택시	1,340,000	134,000	134,000	1,072,000		
84C (6~차상층)	①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990,000	99,000	99,000	792,000			
	②	현관중문	택1 현관중문 + 현관에어샤워기 + 핸드형브러쉬	현관중문	1,490,000	149,000	149,000	1,192,000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③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④	고급거실조명	택1 거실, 침실3 분리형 거실, 침실3 통합형	라인조명(디밍기능포함)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 간접조명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⑤	화장대	화장대	1,340,000	134,000	134,000	1,072,000			
	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130,000	113,000	113,000	904,000			
⑦	주방팬트리 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010,000	101,000	101,000	808,000				
⑧	냉장고장	택1	냉장고장	1,060,000	106,000	106,000	848,000			
			Bi김치냉장고 선택시	1,510,000	151,000	151,000	1,208,000			
			비스포크 냉장고 선택시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구분	주택형	품목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기본 선택 옵션	84A (최상층)	①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800,000	80,000	80,000	640,000			
		②	현관중문	택1	현관중문	1,490,000	149,000	149,000	1,192,000		
					현관중문 + 현관에어샤워기 + 핸드형브러쉬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③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④	고급거실조명	택1	거실, 침실3 분리형	라인조명(디밍기능포함)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거실, 침실3 통합형	+ 간접조명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⑤	화장대	화장대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020,000	102,000	102,000	816,000			
	⑦	주방팬트리 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970,000	97,000	97,000	776,000				
	⑧	냉장고장	냉장고장	1,170,000	117,000	117,000	936,000				
	84B (최상층)	①	추가신발장	신발장	880,000	88,000	88,000	704,000			
		②	현관중문	택1	현관중문	1,490,000	149,000	149,000	1,192,000		
					현관중문 + 현관에어샤워기 + 핸드형브러쉬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③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④	고급거실조명	택1	거실, 침실3 분리형	라인조명(디밍기능포함)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거실, 침실3 통합형	+ 간접조명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⑤	화장대	화장대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120,000	112,000	112,000	896,000			
	⑦	주방팬트리 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960,000	96,000	96,000	768,000				
	⑧	냉장고장	냉장고장	1,170,000	117,000	117,000	936,000				
	84C (최상층)	①	추가신발장	신발장	880,000	88,000	88,000	704,000			
		②	현관중문	택1	현관중문	1,490,000	149,000	149,000	1,192,000		
					현관중문 + 현관에어샤워기 + 핸드형브러쉬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③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④		고급거실조명	택1	거실, 침실3 분리형	라인조명(디밍기능포함)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거실, 침실3 통합형	+ 간접조명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⑤		화장대	화장대	1,340,000	134,000	134,000	1,072,000				
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1,130,000	113,000	113,000	904,000				
⑦	주방팬트리 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픽스판 포함)	580,000	58,000	58,000	464,000					
⑧	냉장고장	택1	냉장고장	1,060,000	106,000	106,000	848,000				
			Bi김치냉장고 선택시	1,510,000	151,000	151,000	1,208,000				
			비스포크 냉장고 선택시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2. 드레스룸 선택옵션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 가능, 기본 선택옵션 ⑤화장대 및 ⑥드레스룸 미선택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선택	품목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드레스룸 선택옵션	84A (1~5층)	④ 드레스룸 통합형	일반형	택1	· 시스템가구(일반형)+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6,540,000	654,000	654,000	5,232,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 아일랜드장 (2EA)	13,770,000	1,377,000	1,377,000	11,016,000	
		⑤ 주방팬트리 +대형드레스룸	일반형		· 시스템가구(일반형)+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5,970,000	597,000	597,000	4,776,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 아일랜드장 (1EA)	12,510,000	1,251,000	1,251,000	10,008,000	
	84B (1~5층)	④ 드레스룸 통합형	일반형	택1	· 시스템가구(일반형)+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6,570,000	657,000	657,000	5,256,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 아일랜드장 (2EA)	14,670,000	1,467,000	1,467,000	11,736,000	
		⑤ 주방팬트리 +대형드레스룸	일반형		· 시스템가구(일반형)+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6,220,000	622,000	622,000	4,976,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 아일랜드장 (1EA)	13,670,000	1,367,000	1,367,000	10,936,000	

구분	주택형	선택	품목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드레스룸 선택옵션	84C (1~5층)	㉠ 드레스룸 통합형	일반형	택1	· 시스템가구(일반형)+ 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3,980,000	398,000	398,000	3,184,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아일랜드장 (1EA)	6,320,000	632,000	632,000	5,056,000	
		㉡ 드레스룸 통합형 플러스 (에어드레서 선택시)	일반형		· 시스템가구(일반형)+ 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에어드레서 선택시)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벽 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에어드레서 선택시) · 아일랜드장 (1EA)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84A (6~차상층)	㉠ 드레스룸 통합형	일반형	택1	· 시스템가구(일반형)+ 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6,210,000	621,000	621,000	4,968,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 아일랜드장 (2EA)	13,460,000	1,346,000	1,346,000	10,768,000	
		㉡ 주방팬트리II +대형드레스룸	일반형		· 시스템가구(일반형)+ 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I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5,750,000	575,000	575,000	4,600,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I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 아일랜드장 (1EA)	12,290,000	1,229,000	1,229,000	9,832,000	

구분	주택형	선택	품목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드레스룸 선택옵션	84B (6~차상층)	㉠ 드레스룸 통합형	일반형	택1	· 시스템가구(일반형)+ 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6,240,000	624,000	624,000	4,992,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 아일랜드장 (2EA)	14,350,000	1,435,000	1,435,000	11,480,000	
		㉡ 주방팬트리II +대형드레스룸	일반형		· 시스템가구(일반형)+ 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I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5,990,000	599,000	599,000	4,792,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I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 아일랜드장 (1EA)	13,450,000	1,345,000	1,345,000	10,760,000	
	84C (6~차상층, 최상층)	㉠ 드레스룸 통합형	일반형	택1	· 시스템가구(일반형)+ 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3,790,000	379,000	379,000	3,032,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아일랜드장 (1EA)	6,130,000	613,000	613,000	4,904,000	
		㉡ 드레스룸 통합형 플러스 (에어드레서 선택시)	일반형		· 시스템가구(일반형)+ 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에어드레서 선택시)	3,570,000	357,000	357,000	2,856,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벽 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에어드레서 선택시) · 아일랜드장 (1EA)	5,920,000	592,000	592,000	4,736,000	

구분	주택형	선택	품목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드레스룸 선택옵션	84A (최상층)	㉑ 드레스룸 통합형	일반형	택1	· 시스템가구(일반형)+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6,210,000	621,000	621,000	4,968,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 아일랜드장 (2EA)	13,460,000	1,346,000	1,346,000	10,768,000	
		일반형	· 시스템가구(일반형)+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I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5,890,000	589,000	589,000	4,712,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I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 아일랜드장 (1EA)		12,440,000	1,244,000	1,244,000	9,952,000		
	84B (최상층)	㉑ 드레스룸 통합형	일반형	택1	· 시스템가구(일반형)+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6,240,000	624,000	624,000	4,992,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2EA(안방, 주방) · 화장대 · 아일랜드장 (2EA)	14,350,000	1,435,000	1,435,000	11,480,000	
		일반형	· 시스템가구(일반형)+벽지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I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6,110,000	611,000	611,000	4,888,000		
		고급 벽판넬형	· 시스템가구(고급형)+고급 벽판넬 시공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화장대 · 주방팬트리II 시스템가구(일반형) 및 도어 (픽스판 포함) · 아일랜드장 (1EA)		13,570,000	1,357,000	1,357,000	10,856,000		

3. 맘스룸 선택옵션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선택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맘스룸 선택옵션	84C (1~5층)	맘스룸	· 맘스룸 맘스데스크 설치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주방형태변경	6,630,000	663,000	663,000	5,304,000	
	84C (6~차상층, 최상층)			6,380,000	638,000	638,000	5,104,000	

4. 마감 선택옵션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마감 선택 옵션	가. 바닥타일 (폴리싱타일)	84A (1~5층, 6~차상층, 최상층)	택1	거실, 주방, 주방팬트리 I 선택	거실, 침실3 분리형	1,940,000	194,000	194,000	1,552,000	
					거실, 침실3 통합형	2,360,000	236,000	236,000	1,888,000	
			㉞ 주방팬트리II+대형드레스룸 선택	거실, 침실3 분리형	2,020,000	202,000	202,000	1,616,000		
				거실, 침실3 통합형	2,440,000	244,000	244,000	1,952,000		
		84B (1~5층, 6~차상층, 최상층)	택1	거실, 주방, 주방팬트리 I 선택	거실, 침실3 분리형	2,030,000	203,000	203,000	1,624,000	
					거실, 침실3 통합형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㉞ 주방팬트리II+대형드레스룸 선택	거실, 침실3 분리형	2,140,000	214,000	214,000	1,712,000		
				거실, 침실3 통합형	2,560,000	256,000	256,000	2,048,000		
		84C (1~5층, 6~차상층, 최상층)	택1	거실, 주방, 주방팬트리 I 선택	거실, 침실3 분리형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거실, 침실3 통합형	2,420,000	242,000	242,000	1,936,000	
			거실, 주방, 주방팬트리 I, 맘스룸 선택	거실, 침실3 분리형	2,470,000	247,000	247,000	1,976,000		
				거실, 침실3 통합형	2,890,000	289,000	289,000	2,312,000		
	나. 고급 아트월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시공	84A (1~5층)		2,940,000	294,000	294,000	2,352,000		
			84A (6~차상층, 최상층)		2,270,000	227,000	227,000	1,816,000		
			84B (1~5층)		2,940,000	294,000	294,000	2,352,000		
			84B (6~차상층, 최상층)		2,270,000	227,000	227,000	1,816,000		
			84C (1~5층)		2,830,000	283,000	283,000	2,264,000		
			84C (6~차상층, 최상층)		2,190,000	219,000	219,000	1,752,000		

구분	품목	주택형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마감 선택 옵션	다. 주방마감 업그레이드	84A (1~5층)	택1	거실, 주방, 주방팬트리 I 선택	주방벽, 주방상판, 아일랜드상판 세라믹타일 시공	4,030,000	403,000	403,000	3,224,000	
				㉠ 드레스룸 통합형 or ㉡ 주방팬트리II+대형드레스룸 선택		3,510,000	351,000	351,000	2,808,000	
		84A (6~차상층, 최상층)	택1	거실, 주방, 주방팬트리 I 선택		3,560,000	356,000	356,000	2,848,000	
				㉠ 드레스룸 통합형 or ㉡ 주방팬트리II+대형드레스룸 선택		3,110,000	311,000	311,000	2,488,000	
		84B (1~5층)	택1	거실, 주방, 주방팬트리 I 선택		4,330,000	433,000	433,000	3,464,000	
				㉠ 드레스룸 통합형 or ㉡ 주방팬트리II+대형드레스룸 선택		3,840,000	384,000	384,000	3,072,000	
		84B (6~차상층, 최상층)	택1	거실, 주방, 주방팬트리 I 선택		3,830,000	383,000	383,000	3,064,000	
				㉠ 드레스룸 통합형 or ㉡ 주방팬트리II+대형드레스룸 선택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84C (1~5층)	택1	ㄷ자 주방 선택		4,550,000	455,000	455,000	3,640,000	
				11자 주방 선택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84C (6~차상층, 최상층)	택1	ㄷ자 주방 선택		3,980,000	398,000	398,000	3,184,000	
				11자 주방 선택		4,020,000	402,000	402,000	3,216,000	

(1) 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옵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북은행	1013-01-4125155	대신자산신탁(주)

(2) 유상옵션 유의사항

- 옵션사항은 세대별, 주택형별로 상이하니 유상옵션품목은 옵션안내문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은 추후 부분선택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분양 모집공고 및 계약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일의 패턴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타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세라믹타일 및 타일류는 본 공사 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일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세라믹 타일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내부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대현관에 에어샤워시스템 선택시 현관 센서등의 사양과 위치가 변경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현관에 에어샤워시스템 선택시 신발장내 가구 디자인이 변경되며 필터 및 집진봉투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전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선택	상세항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전 주택형	일반형	선택1 : 3개소(거실+주방+침실1)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선택2 : 5개소(거실+주방+침실1,2,3)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선택3 : 6개소(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8,300,000	830,000	830,000	6,640,000	
		고급형 (공기청정기능 추가)	선택1 : 3개소(거실+주방+침실1)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선택2 : 5개소(거실+주방+침실1,2,3)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선택3 : 6개소(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9,400,000	940,000	940,000	7,520,000	

2. 기타가전 옵션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가전 선택 옵션 (삼성전자)	전주택형	복합오븐	빌트인 전기 오븐	340,000	34,000	34,000	272,000	HSB-N361B		
		식기세척기	빌트인 식기세척기	860,000	86,000	86,000	688,000	DW60T7065SS (가구판넬 포함)		
		에어드레서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DF60T8300WR		
		쿡탑	택1	인덕션 플렉스존 플러스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NZ63N7757CK
				인덕션 3구		770,000	77,000	77,000	616,000	NZ63T5701AK
				하이브리드 (인덕션1구, 라이언트2구)		590,000	59,000	59,000	472,000	NZ63T4507AK
		TBI 냉장고	택1	일반형	기본 선택옵션 ⑧선택시 선택가능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BRS685050SR
				디스펜서형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BRS665150SR
		84A(1~5층,6~차상층), 84B(1~5층,6~차상층), 84C(1~5층,6~차상층, 최상층)	비스포크 냉장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RF60A91R1AP RQ33A74E1AP
			비김치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RQ22K5L01EC

(1) 가전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가전옵션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397-910009-16304	주식회사 케이앤커

(2) 가전옵션 유의사항

- 옵션사항은 세대별, 주택형별로 상이하니 유상옵션품목은 옵션안내문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옵션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전옵션은 추후 부분선택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분양 모집공고 및 계약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가전 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설치공간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설치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설치공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 및 가전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계약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종속되어 있어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도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입주자 개별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배관위치에 따라 실외기 설치공간에 설치가 안되거나 외부 하향식 피난사다리과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설치 전 실외기 크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전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전 선택옵션 중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천장배관(가스, 전기, 급수 등), 설비(스프링클러, 전등 등)의 배치 및 옵션(드레스룸 통합형 등)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84C, 84CD타입의 경우 알파룸의 옵션(맘스룸) 선택시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천장형 에어컨 시공이 불가(6개소 선택이 불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기타 가전옵션은 시공사는 무관한 품목으로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자발생시 시공사에 민원 및 하자제기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청약·계약하셔야 합니다.

■ 무기질도로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 층구분		품목 (추가시공)	시공면적(m ²)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30	입주지정일	
기타옵션 (무기질도로)	84A	1~5층	침실1,2,3과 드레스룸의 벽체	108	3,200,000	300,000	1,600,000	1,300,000	
	84A	6~차상층, 최상층	침실1,2,3과 드레스룸의 벽체	89	2,630,000	300,000	1,300,000	1,030,000	
	84B	1~5층	침실1,2,3과 드레스룸의 벽체	113	3,340,000	300,000	1,600,000	1,440,000	
	84B	6~차상층, 최상층	침실1,2,3과 드레스룸의 벽체	93	2,740,000	300,000	1,300,000	1,140,000	
	84C	1~5층	침실1,2,3과 드레스룸의 벽체	96	2,860,000	300,000	1,600,000	960,000	
	84C	6~차상층, 최상층	침실1,2,3과 드레스룸의 벽체	79	2,330,000	300,000	1,300,000	730,000	

(1) 무기질도로 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무기질도로 옵션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270901-04-153838	(주)피움이노베이션

(2) 무기질도로 옵션 유의사항

- 기능성 무기질도로 지름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습도를 조절하여 자극 없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기능성 마감재입니다.
- 무기질도로 옵션은 세대별, 주택형, 층별로 상이하니 유상옵션품목은 옵션안내문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질도로 옵션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질도로 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무기질도로 옵션은 추후 부분선택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분양 모집공고 및 계약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질도로 시공시 드레스룸 선택옵션을 선택하신 세대는 드레스룸의 면적이 확장되므로 드레스룸 벽체 전체 시공이 아닌 일부벽체만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하시기전 별도로 제공되는 무기질도로 옵션 안내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질도로 옵션은 시공사는 무관한 품목으로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자발생시 시공사에 민원 및 하자제기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청약·계약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마감재나 수전, 위생도기, 기타설비 등은 녹색건축 인증관련 배점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녹색건축 인증 등을 충족하는 품목을 별도 설치 해야 합니다.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바닥재	<강마루(갈레반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강화석재>현관, <타일>발코니, 대피시설, 실외기실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3)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4)일반가구	신발장, 불박이장, 기타수납장	미설치
5)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콘센트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6)욕실	타일(바닥, 벽), 천장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 양변기, 비데(부부욕실)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7)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시설도어
8)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9)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84A, 84AD	84B, 84BD	84C, 84CD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9,747,000	29,934,000	29,838,000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품목 계약의 경우 공사상의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유상옵선 품목 옵선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선 금액은 자재수급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선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선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선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 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선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선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선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선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선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선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선 선택 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선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선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선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가 마이너스 옵선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선 계약세대는 계약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선)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선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선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선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선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선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선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주동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문주, 담장,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평면면적, 차수판,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진행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및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 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예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AS운영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 요청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전 선택옵션 및 기타옵션(무기질도료)은 시공사와 무관한 품목으로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자발생시 시공사에 민원 및 하자제기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청약·계약하여야 합니다.

■ 기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사항

- 기본주택에는 84B, 84C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CG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너비, 가구배치, 실면적 등 기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에 미 건립된 타입은 기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마감재 설치 형태, 크기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기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옵션형 세대를 전사하였으니,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옵션형 세대와는 다르게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기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 (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이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은 기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및 발코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난방기능 없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 계약 시 확인바랍니다.
- 기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기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기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체 품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질 혹은 동가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사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설비기기 : 세대환기장치(전열교환기),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헤드, 점검구
 - 2)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주방TV
- 세대내 설치되는 각종 후드 경우 본 공사 시 배기성능 확보를 위하여 설치 길이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가전류의 경우 본 공사 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림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시공 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외부 하향식피난구,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세라믹 타일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내부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 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헬륨 및 지하주차장 헬륨용 DA, 주변현황 (단지내외용벽 및 조정석, 조정시설, 단지주변 레벨현황 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 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 선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타일이 90도로 접합되는 부위의 모서리는 45도 면취 가공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착공 및 실시 설계 또는 실제 시공 시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DA, TOP LIGHT, 생활폐기물보관소, 부대시설 실외기실 자전거 보관대, 포장패턴 및 소재, 주변 환경, 동표시, 주동 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문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외부 난간 형태, 색상 및 높이인접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단차 처리 방법 및 마감재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기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 및 인쇄물(기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나 기본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에 옵션품목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부여건

- 남악신도시 내 기반시설은 “무안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및 “무안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전남개발공사, 해당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전남개발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경관녹지,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접 공원 세부계획은 개발계획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원 출입 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지질상태에 따라 인근 공원 및 도로 등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맑은물관리센터, 전기공급시설, 종교시설 등이 설치 또는 설치될 예정으로, 해당 현장을 방문하시어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시설의 설치 여부 및 이전 등은 관계기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당해 지구 북측으로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보성-임성리간 철도가 예정되어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관청 등의 사정에 의하여 노선이 변경되거나 개통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취소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당해 단지 입주전까지 기반시설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입주 후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공사 및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서측에 주상복합용지, 북측에 공공청사용지, 남측에 공동주택용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 완공 후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 주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준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폭 25m), 남측(폭 20m), 동측(폭 25m) 도로를 접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환경 저감방안에 따라 택지 준공 이후 소음저감시설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는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복수 지원 후 추천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는 설립 예정이나 공동주택 건립 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2020.9.1. 개교한 '행복초, 행복중'은 현재 오통개발 1지구(4,487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시설이며, 인근 오통초·오통중학교는 현재 배치능력 초과로 교실증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립으로 유입되는 학생은 신설학교 설립 이후 배치가 가능합니다.
-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분양공고가 확정되어 입주시기가 가시화되고 학교 신설 수요가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설립이 지연, 변경,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개발지구 인근학교 학생배치여건, 학생유입 규모, 공동주택 분양공고 상황,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 심사결과 등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이 지연, 변경되거나 설립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입주시기 조정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설립여부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조성 레벨에 따라 인접한 단지경계부문에 옹벽 또는 조경석 쌓기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설계도면 및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층 세대는 옥상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법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아파트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형태에 따라 상부 옥탑 구조물, 태양광 설비, 환기시설 등이 노출 시공되며 설치 규모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침해, 소음, 진동 및 빛반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 옥상에는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소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 및 저층부 일부에 외벽마감은 화강석 마감 시공 예정이며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또는 마감수준 현저한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자문과 교통성 검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에어컨 실외기가 상가 옥상바닥 및 아파트 지반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수증기 발생,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피로티 등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사업주체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부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사업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남측 101동과 106동 사이 및 104동과 105동 서측에 2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빛반사 등 간섭

- 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등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그 위치나 구조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을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10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여부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 등으로 인하여 소방부서공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놀이터 등 여가공간 설치에 따라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서 등에 명기된 집기 등의 표기는 집기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명기된 것으로 사업승인도서상에 명기된 집기류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동의 저층부 마감(자재종류, 크기, 색상, 시공높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에 의해 각 동별로 주동 진입방식이 상이(필로티 진입, 1층 진입)하고 각각 출입구의 디자인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 및 지상(2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층은 전동 이용토록 구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공용홀로부터의 전급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출입 통제장치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 폭은 6.4m(연석포함7.0M)이며 차량 통행구간의 유효 천장고는 2.7m으로 계획되었으나 시공 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될 수 있고 주차공간의 천장고는 법적기준(2.1m) 준수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의 다락방을 제외한 외부공간으로 표기된 부분은 동 공동주택 단지의 설계상 불가피하게 생기는 공용 공간으로, 해당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해야 하며, 등기를 통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 참조)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및 마감재 관련 유의사항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과정에서 일부세대는 공사기간 중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실의 크기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가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도출, 우물천장 크기감소, 조명의 위치 변경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건식벽체(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벽체이며 철거 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화장대, 침실 불박이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 설계가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 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상 사유로 판자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발코니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높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등급 또는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난간,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사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 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각 발코니의 외부창호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공사상 상이점 등으로 인하여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방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이 설치되는 현관 바닥, 욕실, 주방, 발코니 등의 타일 나누기 및 매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재질은 타일로서 별도의 줄눈이 없는 방식으로 시공되며, 기성품 자기질 타일이지만 문양 및 명도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하자과 무관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이질재질 접합부(콘크리트, 조적)가 있으며, 크랙 유도를 위한 줄눈이 추가되어 타일 시공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라믹타일(유상옵션) 나누기(줄눈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타일(유상옵션) 미 선택시 주방벽은 타일이 시공,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이 시공되며, 본 공사시 마감재의 두께차이로 인하여 창호·문선·주방 상부장 및 하부장 외의 사이즈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창은 계단실에 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대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과 무관합니다.
-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 및 세탁선반, 욕실2(안방) 비데는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장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마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급 또는 등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변형 벽체(건식고정벽체)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성능 등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 홀 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거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사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조,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상부장 후면은 천장 몰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시공 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수전, 우수수 선홍통, 드레인, 배수구 등의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개폐방향 및 사양은 견본주택 기준이나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하향식피난구는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로써 발코니면적에서 제외되어 있고(실외공간은 면적포함) 별도의 창문(그릴창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외부 하향식피난구 주변에 실외기를 제외한 그 외 물품 적치는 피난에 방해되어 피난 및 소방관련 법령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하향식피난구에는 피난사다리 설치되어 화재 등 비상시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아래층인 필로티인 최하층 세대는 외부하향식피난구는 설치되지 않고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외부 하향식피난구(실외기실)는 화재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적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며, 방법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유사사가 아니면 덮개를 열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외부 하향식피난구(실외기실)로인한 공간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평상시 외부 하향식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외부 하향식피난구(실외기실) 외부 난간의 사양, 형태, 크기, 재질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하향식피난구(실외기실) 벽체 및 천장 도장색상은 외관입면 색체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합니다.

■ 기계 전기 설비

- 단지 내 101동 및 105동 인근에는 기계실(공동주택, 근생용)등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 1층에는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흡션 품목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주출입구 남측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입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에 옥실 배기용 무동력 팬이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옥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 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는 다용도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가 다용도실 천장 상부에 노출로 설치 될 예정 (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설비 마감기구인 양변기, 세면기, 약세사리, 수전 등의 위치는 마감 고려하여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설치 되지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침실이 인접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 및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층~10층 세대의 별코니1 또는 다용도실에 법정 소방시설인 완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장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탁기가 설치되는 다용도실은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세대(1~3층)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D, 84BD, 84CD타입의 다락 공간에는 바닥 난방 등 설비시설(수전설비 포함)이 제공 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공동현관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OS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기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연동)
- 주차 위치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스마트키 또는 스마트폰 APP 활성화 후 위치 저장 버튼을 작동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과 주차위치 시스템은 기본 스마트폰 APP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며, 스마트키는 세대당 1개 지급 기준이며, 추가 필요 시 입주자는 별도 구매 하여야합니다.
- Hi-oT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Hi-oT 서비스와 제휴된 IoT 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 및 무선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음.)
- H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내·외부 마감재 및 실별 구획 레이아웃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후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입주 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사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체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인허가 과정에서 또는 동선/성능 개선 등을 위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은 제공하지 않으며, 운영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용도 및 디자인,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는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곡)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인 및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구간은 옥상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휴트니스센터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점포의 천정공간 내부에 공동사용을 위한 위생배관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시설을 철거할 수 없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점포에는 별도의 온수배관이 없으므로 필요시 계약자가 별도로 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점포별 별도의 환기설비 및 냉난방 설비는 공급되지 않으며 필요시 입점자 부담으로 별도의 환기설비 및 냉난방 설치 공사를 하여야 하며 설치로 인한 민원 해결은 계약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단, 별도의 환기설비 및 냉난방 설치 공사시 외부 배출구 미관을 고려하여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별 급수공급배관이 임의의 위치에 설치되며(출입구 1M 이내), 급수배관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밸브마감 처리하며 밸브이후 공사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별 배수용 배관이 1개소 배관캡까지만 설치되며, 실 내부의 배수 연결 공사는 입점자가 설치해야 하고 배관 노출로 일부 공간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내 급수요금은 각 점포별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열원은 LNG(액화천연가스)이며 상가외부 주배관만 설치되므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내부배관,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상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수 없습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계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구분	공시항목	금액(천원)	구분	공시항목	금액(천원)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3,661,918	공사비	건축	유리공사	633,924		
	기간이자	1,676,282			타일공사	1,008,826		
	그 밖의 비용	12,227,088			돌공사	1,744,997		
	필요적 경비	1,177,032			도장공사	797,518		
	계	38,742,320			도배공사	572,577		
공사비	토목	토공사			1,610,756	수장공사	1,158,787	
		흙막이공사			1,760,912	주방용구공사	613,475	
		비탈면보호공사			-	잡공사	1,376,912	
		옹벽공사			-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674,440
		석축공사			-		급탕설비공사	667,628
		우오수공사			348,087		오배수설비	350,846
		공동구공사			-		위생기구 공사	606,316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공조설비공사		350,846	
		도로포장공사	409,515	난방설비공사	1,164,943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가스설비공사	401,939			
		정화조시설공사	-	자동제어 설비공사	245,251			
		조경공사	1,358,222	특수설비공사	-			
	부대시설공사	361,738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6,149,202			
	건축	공통가설공사		1,676,833	정보통신공사		5,486,889	
		가시설물공사		388,535	소방설비공사		5,124,546	
		지정및 기초공사		3,401,380	승강기공사	1,335,258		
		철골공사	-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2,880,293		
		철근콘크리트공사	17,531,762		이윤	4,420,556		
		용접공사	-	계	75,393,222			
		조적공사	742,987	간접비	설계비	1,102,097		
		미장공사	1,199,685		감리비	2,035,220		
		단열공사	463,515		일반분양시설경비	7,984,322		
		방수,방습공사	524,862		분담금 및 부담금	2,465,061		
		목공사	1,056,541		보상비	-		
		가구공사	1,833,610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26,417,155		
	금속공사	1,070,173	계		40,003,855			
	지붕 및 흡통공사	197,675	그 밖의 비용		8,420,603			
	창호공사	1,690,466	합 계		162,560,000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구 분	공시항목	금 액 (원)	비 고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15,080,401,832원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말뚝박기 공사비
건축비	건축비가산비	8,420,603,555원	법정초과 복리시설 공사비,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홈네트워크, 초고속 정보통신특등급, 에어컨냉매배관, 기계환기설비), 분양보증수수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지하주차장충고증가 공사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 목		금 액 (천원)	산출근거	
택지비가산비	합 계	15,080,402	-	
	기간이자	1,676,28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제세공과금	1,177,03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말뚝박기공사비	3,859,70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8,367,38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건축비가산비	합 계	8,420,603	-	
	법정초과복리시설	887,01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인텔리전트 설치비	홈네트워크	2,808,56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782,37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에어컨냉매배관	262,49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기계환기설비	1,488,86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409,32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354,17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지하주차장충고증가 공사비	397,43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전기자동차충전시설	30,35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 「주택법」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등급 표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21-404-04 호	
<p>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입부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20년 01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견본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p>			
신청인	이름	(주)화이진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다워 (마곡동)	
건축물	이름	남아오룡지구 42BL 공동주택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남아신도시 오룡지구 42BL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에너지효율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p>2021년 05월 04일</p> <p>광주전파관리소장 (인) </p>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	전기	소방통신
회사명	주식회사 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서전종합전기	주식회사 21세기이엔지
감리금액	1,094,568,000	455,632,488	300,000,000

11 기타사항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힐스테이트 오릉 42블록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7812021-101-0000700 호	일천일백삼십칠억구천이백만원정 (₩ 113,792,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주요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중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자 및 시공사

구분	시행자			시공사
	대표 시행자	공동 시행자		
상호명	(주)남약오룡42피에프브이	(주)화이진개발	주식회사 에이치엠지파트너스	현대엔지니어링 (주)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타워동 에이 3008호(영덕동, 흥덕IT밸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713호 (마곡동, 푸리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0길 35, 7층 (논현동, 동양애니메이션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계동)
등록번호	338-88-02070	782-86-00431	261-81-22461	101-81-66755

■ 사이버건본주택 : www.hillstate-hec.co.kr/oryong

■ 건본주택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약리 2288번지

■ 분양문의 : ☎ 1811-071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건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